제763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1.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강화(강화)ㅇ 관련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 * 17개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해임사유로 이미 명시	1.비중요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유료방송 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완화(신설)유료방송 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완화 및 조건2.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신설)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1.비중요 2.비중요
3	방송법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유료방송 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완화(신설)유료방송 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완화 및 조건2.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신설)유료방송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3.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신설)ㅇ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 또는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및 서비스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함 ㅇ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결합서비스 신고하는 경우, 행정청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 또는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1.비중요 2.비중요3.비중요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금융위원회)	1.사모펀드 관련 규제 강화(강화)① 다수의 자사子펀드가 母펀드 기준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子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母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함 ②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자사펀드간 순환투자, 꺾기(펀드자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 강요), 자사펀드 투자를 통한 1인펀드 설정 금지규제 회피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③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하여 파생상품 매매현황 보고시 위험평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5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안(환경부)	1.기준기간 사업장 신증설 기준변경(강화)사업장 증설 인정 기준 : 기존사업장 내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배출시설들의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원인이 되어 기존사업장의 변동 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동 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고, 기존사업장 내 변동 시설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이 변동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인 사업장2.배출권 추가할당량 산정기준변경(강화)Min { (해당 증설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증설된 사업장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할당량 결정시 고려된 해당 증설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변동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1.비중요 2.비중요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배출량) }3.배출권 할당량 산정시 할당계수 적용(강화) 감축여력의 차이가 큰 일부 배출시설을 구분하여 할당량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할당계수를 적용하여 할당량을 산정	
6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환경부)	1.생태계교란 생물 추가 지정 (강화) 위해성평가 결과 1등급(위해성 높음) 판정된 악어거북(Macrochelys temminckii) 등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사육·방사 등을 제한함으로써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사전 예방	1.비중요
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환경부)	1.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강화)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이전에 공개	1.비중요
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	1.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강화(강화)사용신고기관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매년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	1.비중요
9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여성가족부)	1.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개선(강화)ㅇ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취소 등의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 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외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ㅇ 기존 입법미비사항이었던 처분 관련 일반기준 추가	1.비중요
10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국토교통부)	1.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자격요건 구비 의무 부과(신설) 교통안전교육 대상을 택시운전자격을 보유(개인택시	1.비중요 2.비중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면허 양수 필수요건)하고, 교육수료 후 3년 이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로 명확히 규정2.교육대상자에 교통안전교육 방법 및 이수기준 충족 의무부과(신설)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의 이수기준으로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으로 규정	요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1.소량생산차 자기인증을 위한 기술검토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신설)소량생산 자동차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할 때,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작하도록 유도하여 제작자의 재산 및 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제작자 스스로 안전도 확인방법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2.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신설)현행 소량생산차의 기준대수는 100대 이하로만 되어 있고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대수를 보다 완화함과 동시에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히 하여 제작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량생산자동차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성 발생. 이에 따라 소량생산자동차의 적용대상을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규제완화함과 동시에 적용대상을 수제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등으로 명확히 규정3.성능시험대행자에게 소량생산차 인정여부 및 운행필요 조건 검토 의무 부과(신설)국토교통부장관은 성	1.비중요 2.비중요3.비중요4.비중요5.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능시험대행자에게 소량생산차 인정여부 및 운행에 필요한 조건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함4.소량생산자동차 인정시 조건부과(신설)제작자가 소량생산자동차 인정 신청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량생산자동차로 인정을 할 때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39조의4제3항 후단)5.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의 세부기준 근거 마련(강화)* 개선 :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에 관한여 제55조제3항 및 제4항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07조제2항은 일반자동차의 튜닝승인 기준관련 조항을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는 조항으로, 튜닝승인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등을 준용대상으로 추가함- 제55조제3항은 국토부장관이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임 (제55조제4항은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튜닝에 대하여 튜닝금지사항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하는 규제완화 조항임)	
12	실용신안법 개정안(특허청)	1.소발명권의 존속기간 (신설)소발명권의 존속기간(5년)을 규정	1.비중요
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1.월간 수급보고 법적 근거 보완(신설)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월간 수급보고 대상을 “그 밖의 석유제품”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으로 변경	1.비중요
14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1.표준어선형 인정기준 등(신설)안전복지가 강화된 표준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제정안(해양수산부)	어선형을 선택하여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어선형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 및 기준 마련	
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1.내압용기 검사책임자 및 검사원 자격제한 요건 신설(신설)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와 장착검사 기술인력 자격 명확화2.내압용기재검사 시 인력구성 제한(신설)내압용기 재검사 재검사 인력구성 명확화	1.비중요 2.비중요
1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1.결함 추정 요건에 관한 사항(신설)결함 추정 요건을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인 화재 발생과 인명 피해와 같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규정	1.비중요
17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국토교통부)	1.마감재료 난연성능 평가기준 강화(강화)불연, 준불연, 난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난연 등급에만 규정되어 있는 복합자재용 강판의 구체적인 스펙을 불연, 준불연에도 적용2.마감재료 성능시험체 및 시험횟수 기준 강화(강화)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체보다 크거나 작은 시험체의 경우에는 정확한 화재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 시험기관 등에서 자체적인 합의에 따라 규정하고 있던 방식을 반영하여 시험체 구성방식을 반영하고, 양면 등 성능이 다른 마감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을 반영하여 앞면, 뒷면, 측면을 모두 시험하도록 함3.시험성적서 표기사항 의무화(강화)시험성적서에서 주로 위·변조되는 시험대상품, 시험결과, 유효기간 등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도록 하고, 시험성적 결과는 시험성적서 전체에 음역으로 사선 표기하	1.비중요 2.비중요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도록 하는 한편,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장치 등을 하도록 함	
1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금융위원회)	1.상호금융업권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위험관리 강화(신설)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 기준의 규정 근거 마련	1.비중요
1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1.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강화)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하는 등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생산공장에 대한 공장 품질 관리상태 확인 등을 통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안전성을 추가 확보)	1.비중요
20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	1.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신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인정	1.비중요
2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1.성능인정 적용 범위(신설)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이 있는 건축설비관련 신기술에 대한 적용대상·범위 및 신기술 인정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2.결합건축 허용 기준(신설)결합건축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건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3.특별건축구역 제안 동의 요건(신설)민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동의 절차를 두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사유재산 보호 및 책임성 강화	1.비중요 2.비중요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2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1.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강화(강화)(단서신설)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설치	1.비중요
23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1.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강화(강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구역 제외)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도록 노외주차장 설비기준 추가	1.비중요
24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보건복지부)	1.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및 기능 등(신설)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의무 신설2.수혈관리실 인력 및 교육기준(신설)수혈관리실 인력에 대한 교육의무 및 기준 신설3.혈액원, 의료기관의 제출정보 등(신설)혈액원,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 정보를 제출하는 의무 신설4.행정처분 기준(신설)혈액원이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1.비중요 2.비중요3.비중요4.비중요
25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1.전기냉장고·전기냉방기·창 세트·텔레비전수상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상향(강화)전기냉장고·전기냉방기)·창 세트·텔레비전수상기(TV)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상향2.전기냉장고·전기냉방기·텔레비전수상기의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기준 제시(강화)전기냉장고·전기냉방기(에어컨)·텔레비전수상기(TV)의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제시3.전기냉장고·텔레비전수상기의 소비전력량 산출방식 변경(강화)전기냉장고·텔레비전수상기(TV)의 소	1.비중요 2.비중요3.비중요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비전력량 산출방식 변경4.전기냉방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효율라벨 표시방법 명확화(신설)전기냉방기(에어컨)의 효율라벨 표시 명확화	